[서식 예]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



소 장

원 고 O O O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

피 고 △△세무서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○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○○○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워 인

- 1. 피고는 20○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금○○○원을 부과하였습니다. 즉,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□□□로부터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○제곱미터를 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.
- 2. 그러나 원고는 위 부동산을 소외 □□□□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☆☆주식회사 경리사원으로 근무하고서 20○○. ○. ○. 퇴사 후 퇴직금을 모아 소외 □□□로부터 매수한 것입니다.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증여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한 부과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합니다.

입 증 방 법



1. 갑 제1호증

매매계약서

1. 갑 제2호증

부동산중개인확인서서

1. 갑 제3호증

퇴직금내역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납 부 서

1통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원 고 ㅇ ㅇ ㅇ (인)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*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제9조 ~ 제34조
비 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 396조)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제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 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제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